

시저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보조지원 지원품

- 문의처 : ☎1544-3088
 □ 지원금액 :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공단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 및 기준

(지원대상)

-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보유하거나 그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 제외대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재보험미가입(체납) 사업주 등
- ※ 지원 후 3년간 사후관리실시 및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지원조건)

- 고소작업대 전체 보유현황 제출(설비관리대장 등에 보조금 지급 희망하는 설비 체크)
 => 동일 고소작업대에 중복지원 불가
- 지원 후 3년간 사용조건으로 분실, 파손 시 보조금 반납 조건

① 안전바

	지원품목 세부기준	-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상부에서 안전바 상부까지는 20cm이상, 하부까지는 15cm이상일 것 - 전면(4면)에 설치할 것
	최대지원한도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② 안전봉(코너 설치형)

	지원품목 세부기준	- 코너 4개소에 설치할 것 - 작동스위치는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상부에서 60cm 이상으로 설치할 것
	최대지원한도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 제출서류 등

연번	제출서류	작성방법
1	보조지원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서식 1] 사용 (3~4p) ※ 온라인 신청시는 작성 불필요 ↳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고
2	견적서(원본)	[예시. 제품관련자료] 참고 (5p~9p)
3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지원물품 자료	
4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 ※ 제출가격과 공단 지원한도를 비교하여 저렴한 가격을 공단 판단금액으로 결정하여 보조금 지원	
5	고소작업대 보유현황(설비관리대장 등)	
6	보조금 지급 희망하는 고소작업대 사진	참고 (9P)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산재완납증명원	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고용산재 토털서비스) (total.kcomwel.or.kr) (10P)
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co.kr) (11p)
10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서식 2] 사용 (12p)
11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동의서	[서식 3] 사용 (13p)
12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서식 4] 사용 (14p)
13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	[서식 5] 사용 (15p~16)

□ 신청방법 : 5/31일 이후 오프라인 신청만 접수 가능

- 전체(1번~13번) 작성, 우편 또는 일선기관 방문 접수
- * 방문 접수 시 대리신청 불가

파일 다운로드: 클린홈페이지(clean.kosha.or.kr) > 서식모음

1. 보조지원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뒷 면)

[서식 1. 보조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개정 2017. 2. 7>

(앞 면)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 융자지원 ☒ 보조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신청인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2000.01.01.		
	자택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000					
	자택전화	052-000-0000		이동전화	010-0000-0000		
신청업체개요	신청업체명	00에너지주식회사		사업장관리번호	123-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123-XX-XXXXX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대표자	홍길동		법인등록번호	해당시 작성		
	근로자수	00 명		회사전화번호	02-000-0000		
	공사금액 (건설업만 기재)	00 원					
	업종	건설업본사		FAX 번호	02-000-0000		
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000 (본사)						
	신청설비 설치 소재지 (-) 사업장 소재지와 다를 시 작성 (설치현장)						
신청금액	총소요금액	3,000	천원	보조신청금액	2,100 천원		
	자체 부담금액	900	천원	융자신청금액	해당없음 천원		
융자희망 금융기관	은행명	해당없음		은행(중앙회)	지점		
	소재지	(-) 해당없음 (전화번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5항 및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9조, 제21조, 제28조의2, 제28조의6 또는 제28조의10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X 년 X 월 X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 제조·서비스업(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포함)

[단위: 대(식), 천원]

투자 설비명	모델/규격 (차대번호)	수량	소요 금액	자금지원 신청금액			자체 부담금	투자완료 예정일
	견적업체	단가		계	보조금	융자금		
계	-	-	500	350	350	-	0	-
안전바		10						
	△△△	300	300	210	210	-	0	2021.07.XX
안전봉		10						
	set(4개) △△△	200	200	140	228	-	0	2021.07.XX

■ 신청서 첨부서류

- ① 견적서(원본)
- ② 상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 등
- ③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
 - 전문가가격조사기관 자료, 실거래금액 자료, 수입면장 등
 - 제조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정부공인가격기준)
- ④ 현장전경 및 설치 위치 배치도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⑥ 산재완납증명원(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⑧ 기타 동의서 및 서약서

2. 견적서[제품관련자료]: 방법 ① 또는 ② 중 택1

안전바(과상승방지장치)

판매가격 (단위: 원) - Vat포함

기본

수량

규격(모델명)

증빙방법

판매 총금액

① 온라인 견적서(온라인 조회결과 캡처)
(부가세 제외가격만 인정됨)

견 적 서
(OFFER SHEET)

귀중

견 적 일 ▶ 2019년 1월 1일

달 당 자 ▶

공 사 명 ▶

※ 하기와 같이 견적합니다. (견적일로부터 10일간 유효합니다.)

공급가	부가세	합계
명칭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VAT 별도

* 참고 사항 :

세 부 사 항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오니 사업자 등록증 송부시 E-MAIL 주소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오프라인 견적서(판매업체 발행)

3. 상품설명서, 카탈로그[제품관련자료]: 방법 ①~② 중 택1

안전바(과상승방지장치)

타입	안전바
구성	협차식 난간대
규격	적용 장비 따라 상이
적용 모델명	전 고소작업대 적용
제조사	

① 온라인 카탈로그 화면캡처 또는 ②오프라인 카탈로그 스캔

안전봉(코너설치형)

금액 : **,000 원

① 온라인 카탈로그 화면캡처 또는 ②오프라인 카탈로그 스캔

[illegible][illegible]

② 판매업체 발행 해당상품 기거래 전자세금계산서(5건 이상) 및
해당상품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③ 수입품의 경우 수입관련 서류(수입면장 등)					
제 조 원 가 계 산 서					
■ 품 명 :				■ 생산량 :	1
■ 규 격 :				■ 단 위 :	EA
구분	내역	금액	구성비	비고	
① 재료비	직접재료비	459			
	간접재료비	233			
	작업설비상환(스)	-			
	소재	692	27.6%		
	직접노동비	549			
	간접노동비	532			
	소재	681	39.9%		
	전력	131			
	수도광열비	390			
	운반비	-			
	알기상각비	-			
	수입수선비	346			
	특전권사용료	-			
	기술료	-			
	연구개발비	-			
② 관리비	시설관리사비	-			
	지급원하료	-			
	보험료	195			
	배전후생비	315			
	보통공비	-			
	외주가공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소모품비	-			
	에너지·교통·통신비	-			
	세무과공과	259			
	불기물취급비	-			
	도서인쇄비	-			
	지급수수료	-			
	기타법정관리비	-			
	소재	636	5.7%		
④ 배분조원가		409	73.1%	(①+②+③)	
⑤ 일반관리비		678	5.1%	(①+②+③) × 7%	
⑥ 이익율		448	12.7%	[(배분가+⑤) × 1.05배 - (배분가+⑤)] ÷ 1.05배	
⑦ 총원가		935	90.9%	(④+⑤+⑥)	
⑧ 부가가치세		993	9.1%	(⑦) × 1.0%	
총액		928	100.0%	(⑦+⑧), 단위당 당가합	

④ 판매업체가 제공하는 해당상품 제조원가계산서

5. 고소작업대 보유현황(설비관리대장 등)

		고소작업대 관리대장		관리부서		
				PAGE		1

NO	관리번호	계측기명	구 격 (제작번호)	검표장 판언		비고
				교정	주기	
1						
2						
3						
4						
5						
6						
7						
8						
9						
10						

보유현황

6. 보조금 지급 희망하는 고소작업대 사진



고소작업대

7. 사업자 등록증

[별지 제4호 서식(1)]

사업자등록증 ()

등록번호

① 상 호: ② 개업연월일: 년 월 일 ③ 사업장소재지: ④ 사업자의 주소: ⑤ 사업의 종류 : 업 태 ⑥ 교부사유: ⑦ 공동사업자: ⑧ 우류판매신고번호:	⑨ 성 명: ⑩ 주민등록번호: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인

세무당장은 鑫인국 어디서나 JSBB-0000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8. 산재보험완납증명원

발급번호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	
2000-2015-12358					
사업장명		[사업장명]			
건설공사명		[건설공사명]			
소재지		[소재지]			
보험가입자(대표자)		[보험가입자(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지번호)	
보험성립일		고용 2015-07-01	보험소멸일		고용 2015-07-01
사업장종류		고용 상용직종업			
		산재 도·소매 및 소매자영업종업			
사업장지번호		사업장지일		사업장지(공사)명	
징수금액 내역		금액		원	
		유예기간			
읍 도		사업장소재지		출생지	
				기타 []	
본납·종업원·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을 제외하고는 청납액이 있음을 증명함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25일					
인책인: [인책인] [직명 또는 관]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귀하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출력일시 : 2016.06.29 16:2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번호	발급일시	2016-06-29 16:19	사업장 관리번호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 가입 내역(발급일자 현재기준) 1 / 1

연번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자격 취득 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1						
2						
3						
4						
5						

이 하 여 백

- 이 확인서는 [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표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 [-]는 가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로서 직인이 날인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직인생략"은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것으로 가입내역확인은 유효합니다.
 - 위 가입내역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기초한 자료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0, 산재보험 1588-0075, 고용보험 1350)
 - [산재보험]의 경우 자격취득일은 근로자 고용일을 뜻하며, 건설업 및 발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대상자가 아니므로, [고용일(자격취득일)]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자료는 피보험자격 확인 등 고용보험 업무목적만을 위해서만 제공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이사장

위와 같이 건강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이사장

위와 같이 산재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장

위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직인생략

- 위 확인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이며,
 발급사실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의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co.kr) 접속 후 출력(15일 이내 발급분)
 ☞ 산재보험 가입자 1명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함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우리 공단에서는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사업장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사업 전산입력 및 운영, 보조금 결정통보, 보조금 지급, 지원(결정)취소 및 환수 등 용자·보조 규정 상 사업추진, 사업성과 분석 및 기타 만족도 조사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식별 정보 :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자택주소, 휴대폰번호, 자택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금 지원신청 후 취소되는 경우 : 취소처리 후 즉시 폐기

▷ 보조금 신청 후 자금지원 결정 대상이 된 경우 : 용자·보조사업 운영규정 및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준영구) 보관하고 보유기간 경과 및 취소 등 소멸사유 발생 시 즉시 파기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 사업주(동의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보조금 결정 및 지급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신청취소 등 업무처리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XX월 XX일

○ 사업장명 : ○○관정

○ 신청인·동의자(사업주) : 홍길동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3.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XX월 XX일

기업명 ○○환경 (인)

대표자 홍길동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서식 4.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개정 2020.07.29>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제16조제2항 및 제28조의19 관련)

■ 제조·서비스업(),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1. 우리 공단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통보 등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사업」의 **향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신청(사업주↔공단) ➡ 보조신청서 접수 및 지급 대상자 결정통보(공단) ➡ **시설투자(사업주↔공급업체) ➡ 이행보 증보험증권 및 전제 설비·공사대금 지불** 관련 증빙서류와 **보조금지급 위원장 제출**(해당 시) 및 **투자완료확인 요청**(사업주↔공단) ➡ 투자완료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공단→사업주 또는 공급업체) ➡ 사후기술지도(공단)

2. 보조신청 사업주는 ‘보조지원 신청 시’ 지원받고자 하는 설비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여** 최저·최저 가격을 제시한 공급업체의 견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확인 요청**(1개월 1회 연장 가능,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의 경우 3개월)을 하지 않는 경우,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 **보조지원 대상품목**에 대하여 결정통보받은 내용과 동일여부(구매사양, 안전조치기준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 공단에 보조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보조지원 대상품목** 중 기존설비에 부착되는 안전보건설비는 사업주가 소유하고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사용하는 설비(고정 구조물 및 천장 크레인 등 이동불가 설비 또는 임대업 제외)에 부착되는 것에 한하며 사업주는 이에 관한 사전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6. 보조금을 지급받기 이전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투자완료일로부터 최대5년)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명 ③ 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및 기타 변경사항 발생 즉시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변경승인 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변경승인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지원결정 취소 및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7.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으로 투자한 설비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보조지원의 목적에 반하여 설치장소 및 설비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 대각, 증여 및 폐기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 클린사업장 인정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3년이며 클린사업장 인정 상태를 계속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이 경과되기 전 클린사업장 재인정 신청하여야 합니다.
8. 사업주는 보조금 신청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지, 해당 설비의 취득으로 인한 신고, 세금 납부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하여야 하며, 만약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 설치물의 강제철거 등 불이익(철거된 경우 보조금 환수)이 발생될 수 있음(특히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 4 포함) 또는 개발제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함)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② 보조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페이백 등)
- ③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 ④ 보조지원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⑤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는 경우
- ⑥ 공단의 사후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기술지도가 불가한 경우**
- ⑦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 ⑧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보조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

위의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생년월일 성 명	(서명)
--------------	-------------	------

(210mm×297mm(일방용지 60g/㎡(재활용품)))

클린사업 청렴의무 이행 행동수칙

1. 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장 참여에 있어 법과 관련 규정·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한다.
2.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관계자와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4.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관계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5. 혈연·학연·지연·종교 등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6.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요구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클린사업 청렴의무 이행수칙」(뒷면)을 숙지하였으며, 만약 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전공단,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부정청탁 시 청탁자와 수행자 모두 처벌, 청탁금지법 제5조 및 제8조)

【클린사업 추진 주의사항】

- ※ 자금지원 신청서 작성 시 공급업체와 구매(공사)계약서를 통해 규격, A/S 기간·절차 등에 대해 협의 후 업체 및 모델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설비(공사)대금 지급은 공급업체에게 직접(계좌이체 등) 지급하셔야 하며, 해당서류만 실거래 입증서류로 인정됩니다.
- ※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설비가 현장 작업여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 변경 사유를 포함하여 투자계획변경요청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 변경하고자 하는 제품 가격이 높아진 금액에 대한 차액은 사업장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최초 지원목적과 다른 품목으로 변경은 불가능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안전보건공단 직책 : 성명 : (서명)